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자에 경찰소방공무원 장기재직자 포함 등 >
■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120호)

2024.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국립헌충원 안장 대상자에 경찰·소방공무원 장기재직자 포함 등	2
※ 참고자료	9

I. 제안경위

1. 제안자 : 이철규의원 등 10인
2. 제안일 : 2024. 6. 4.
3. 회부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한 사람을 현충원 안장대상자로, 1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대상자로 하고 있음.

한편, 2025. 2. 28. 시행 예정인 개정법에서는 경찰·소방 공무원의 경우 치열한 재난·범죄 현장에서 군인과 유사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제복근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충원 안장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호국원 안장 자격마저도 30년 이상 장기재직한 정년퇴직자로 규정하여, 군인에 비해 지나치게 긴 재직기간을 요건으로 하면서 퇴직 형태에 따라서도 안장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장기 근무한 사람이 호국원 뿐만 아니라 현충원에도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안장 자격이 부여되는 재직기간을 완화하며 퇴직 형태에 따른 제한을 삭제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걸맞은 책임과 예우를 다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Ⅱ. 검토의견: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자에 경찰·소방공무원 장기재직자 포함 등

- 개정안은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사람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하고, 경찰·소방공무원의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를 재직기간 3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단축하며, 퇴직 형태에 따른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안장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1항).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356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및 국립연천현충원 가. ~ 하. (생략) <u><신설></u>	법률 제20356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 ----- ----- -----. -----. 1. ----- ----- 가. ~ 하. (현행과 같음) 거. <u>경찰·소방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한다.</u>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4. 국립호국원 가. ~ 다. (생략) 라.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경찰·소방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에 한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한다. 5. (생략) ② ~ ⑦ (생략)	4.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한다. 5.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	---

□ 현행법은 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 복무하고 사망한 사람을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으로서 사망한 사람은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¹⁾

○ 한편, 경찰·소방공무원의 경우 군인과 달리 장기재직자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2024년 2월 국립묘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0356호, 2025년 2월 28일 시행)을 통하여 경찰·

1) 「국립묘지법」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및 국립연천현충원

마.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복무기간 계산은 「군인연금법」 제5조를 준용하되, 사관학교 등 군 양성교육기간을 포함한다)한 사람 중 전역·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

4. 국립호국원

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사망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에 포함하였음.²⁾

- 이에 대하여 경찰·소방공무원은 군인과 유사하게 치열한 범죄·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군인의 경우와 달리 현충원 안장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호국원 안장을 위해서는 군인에 비하여 긴 재직기간 및 퇴직 형태의 제한을 요구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 개정안은 30년 이상 장기재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의 경우에도 군인과 같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재직기간 단축 및 퇴직 형태 제한 삭제를 통하여 경찰·소방공무원의 국립호국원 안장 요건을 보다 완화하려는 것임.

< 군인 및 경찰·소방공무원의 장기 재직 관련 국립묘지 안장 요건 >

구분	국립현충원		국립호국원	
	군인	경찰·소방공무원	군인	경찰·소방공무원
시행예정 법률	· 20년 이상	· 장기 재직자 안장 근거 없음	· 10년 이상 ※ 퇴직 제한 없음	· 30년 이상 ※ 정년퇴직자 한정
개정안	· 20년 이상	· 30년 이상	· 10년 이상 ※ 퇴직 제한 없음	· 20년 이상 ※ 퇴직 제한 삭제

2) 법률 제20074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립호국원

라.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경찰·소방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에 한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한다.

□ 경찰·소방공무원은 일반 국민 또는 다른 직군의 공무원에 비해 위험직무 순직 및 공상 인원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직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현실적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경찰·소방공무원의 재직기간이 길수록 국민안전을 보호하는 데 따르는 신체적·정신적 희생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음.

또한, 경찰의 경우 6·25전쟁 등 유사시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등 군인과 함께 국가수호업무를 병행해 왔고, 소방공무원 역시 업무 특성상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경찰·소방공무원이 장기복무 군인과 유사한 재직기간을 충족한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일응 수긍할 수 있음.

□ 다만, 장기재직 경찰·소방공무원의 국립현충원 안장 여부와 국립호국원 안장에 관한 재직기간 완화 및 퇴직 형태 제한 여부 등은 평균 근속기간, 공헌 정도, 사회적 공감대 및 기존 개정 취지 등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국립현충원 안장 여부와 관련하여, 현재 현충원은 전사자, 상이군경 등 생명 또는 신체에 특별한 희생이 있는 분들이 안장되어 있고, 호국원은 단순 참전유공자가 주로 안장되어 있다는 점,³⁾ 경찰·소방공무원은 비교적 장기간 근속하므로 장기 재직 여부에

3) 현충원 안장자는 국가유공자(전몰·순직·전상·공상군경)가 약 14만명으로 전체 안장자(약 19만명)중 74%를 차지하는데 비해, 호국원 안장자는 참전유공자가 약 14만명으로 전체 안장자(약 16만명) 중 약 88%를 차지하고 있음.

따라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해진다면 현충원의 잠재적 안장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개정안과 같이 호국원 안장 재직기간 요건을 ‘3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낮추는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찰·소방관이 동 직종 퇴직 인원의 90% 이상⁵⁾에 달해 경찰·소방 직군의 대부분이 국립묘지에 안장되게 됨으로써 국립묘지가 경찰·소방관을 위한 묘지로 인식될 우려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호국원 안장 요건 중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으로 퇴직 형태에 따른 제한을 둔 것은 퇴직 후 다른 기관에 재취업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에서 동 규정을 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⁶⁾
- 넷째, 시행 예정 법률의 입법 논의 경과에 비추어, 의결 당시와 특별한 입법정책적 사정 변경이나 국민적 여론의 변화 등을 찾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시행 후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그 밖에,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에 포함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비위행위를 한 사람은 제외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장 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4)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3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 인원은 약 52,459명으로 추정되고, 3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할 인원은 향후 10년간 48,288명이 될 것으로 추정됨.

5)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경찰·소방공무원의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는 사람의 비율은 전체 퇴직인원의 90.1%에 달한다고 함.

6) 제410회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3년 12월 5일)

하는 규정을 함께 신설하였으므로,⁷⁾ 개정안과 같이 장기 재직 경찰·소방공무원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추가할 경우, 이를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개정안에 따른 경우 안장 수요는 연평균 약 133명(10년간 1,332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10년간 총 185억 3,600만원의 안장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⁸⁾

<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합계
국립현충원 확충비용	-	-	-	671	8,849	8,849	-	-	-	-	18,369
추가 안장비용	17	17	17	16	16	16	16	16	16	19	167
합 계	17	17	17	687	8,865	8,865	16	16	16	19	18,53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국가보훈부는 30년 이상 장기재직한 경찰·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국립호국원 안장 자격을 부여한 개정 법률이 시행 전(2025년 2월 28일 시행)에 있으므로 추가 개정은 법률 시행 이후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7) 법률 제20074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4의2. 제1항제4호라목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처분 또는 비위사실 등으로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1항제1호차목, 타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8) 참고 1(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전망)(10p), 개정안에 따른 경우, 30년 이상 재직 경찰·소방공무원의 경우 안장 지역이 국립호국원에서 국립현충원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안장 수요 증가분은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 경찰·소방공무원의 예측치이며, 안장비용은 (국립현충원 확충비용+추가 안장비용)으로 추계함.

문 의 처
02)6788-5110

참고1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전망⁹⁾

□ 국립현충원: 2029~2031년¹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9	2030	2031	합 계
국립현충원 확충 비용	공사비			8,091	8,091	16,183
	부대경비	설계비	671			671
		감리비		739	739	1,477
		시설부대비		19	19	38
합 계			671	8,849	8,849	18,369

- 주 1. 국립현충원의 공사는 2030년에 착공하여 2031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공사비는 각 연도별 50%씩 배분함
 2. 설계비는 2029년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감리비는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보통)을 적용함
 3. 국립현충원의 확충 비용에는 토지매입비 제외, 해당 금액 포함 시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결과보다 증가할 수 있음

□ 국립호국원: 2026~2035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퇴직 경찰·소 방공무원 안장비용	안장 인원 (A, 명)	150	144	138	133	127	122	118	114	112	127
	1기당 안장단가 (B, 천원)	114	117	119	122	124	127	129	132	134	137
	추가재정소요 (C=A×B, 백만원)	17	17	17	16	16	15	15	15	15	17
퇴직 예정 경찰·소 방공무원 안장비용	안장 인원 (A, 명)	1	1	2	3	4	5	6	7	8	10
	1기당 안장단가 (B, 천원)	114	117	119	122	124	127	129	132	134	137
	추가재정소요 (C=A×B, 백만원)	0.1	0.2	0.2	0.3	0.5	0.6	0.7	0.9	1.1	1.4

자료: 국가보훈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5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합계
국립현충원 확충비용	-	-	-	671	8,849	8,849	-	-	-	-	18,369
안 장 비 용	기존 퇴직자	17	17	17	16	16	15	15	15	17	161
	퇴직 예정자	0.1	0.2	0.2	0.3	0.5	0.7	0.9	1.1	1.4	6
	소계	17	17	17	16	16	16	16	16	19	167
합 계	17	17	17	687	8,865	8,865	16	16	16	19	18,536

주: 2031년 국립현충원 봉안시설 10,000기 확충을 전제로 추계, 공사기간 변경, 토지매입비 반영 등 봉안시설 확충 공사 내용 변경 시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9) 국립묘지법 개정안 비용추계서(국회예산정책처)

10) 안장지가 국립호국원에서 국립현충원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국립현충원 확충비용으로 추계함.

참고2

각종 현황 및 통계

□ 경찰·소방·교정공무원의 순직·공상비율 및 자살률 현황

○ 경찰공무원의 순직·공상자 등 현황(출처: 경찰청)

- 최근 10년간 경찰관 순직·위험직무순직·공상·자살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순직	161	18	16	21	17	13	14	17	19	18	8
위험직무순직	21	1	4	6	2	2	1	4	0	0	1
공상	17,076	2,011	1,835	1,867	1,632	1,839	2,127	1,564	1,163	1,519	1,519
자살	217	21	18	27	22	16	20	24	24	21	24

○ 소방공무원의 순직·공상자 현황(출처: 소방청)

- 최근 10년간 소방관 순직·공상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순직	40	7	2	2	2	7	9	2	3	4	2
공상	7,927	358	409	511	657	823	818	1,004	933	1,080	1,334

□ 경찰·소방공무원 근무환경('23년 기준)

○ 112신고현황(자료: 경찰청)

- 112출동건수는 '23년 기준 총 21,476,127건에 달함

- 긴급대처가 필요한 5대 범죄(살인, 강도, 절도, 강간, 폭력)의 발생비는 '22년 기준 48.5건(인구10만명당 발생비)으로 전년 대비 5건이 증가

《연간 112 신고건수》

구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신고건수(건)	55,983,424	18,976,334	18,296,631	18,710,459	19,117,453	21,476,127
총인원(명)	382,453	124,303	128,295	129,855	132,595	133,760

※ 112 신고 1건당 최소 2명 ~ 최대 수백명(실종자 수색 등)이 출동

○ **119출동현황(자료: 소방청)**

- 119출동건수는 '23년 기준 1,309,614건에 달함
- 최근 5년간 화재발생건수/화재로 인한 사망·부상자 수 추이

구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발생(건)	193,999	40,103	38,659	36,267	40,113	38,857
사망(명)	1,552	285	364	279	341	283
부상(명)	10,511	2,230	1,915	1,845	2,327	2,194

- 최근 5년간 구조·구급 등 출동건수

구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구조(건)	4,437,234	893,606	838,194	1,062,612	640,099	653,165
구급(건)	14,558,086	2,929,994	2,766,136	3,148,956	3,564,720	3,486,526
생활안전(건)	2,500,465	430,534	400,103	538,672	520,102	611,054

□ 경찰·소방공무원의 복무형태(비상근무 및 상시훈련 등)

○ 경찰공무원

- 경찰관 비상상황 대비 직무복귀 규정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여행의 제한)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치안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간중에는 소속경찰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경찰 비상근무 종류 및 근무 방식(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7조)

종류	근무 방식
갑호 비상	가. 비상근무 갑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다. 나. 지휘관(지구대장, 파출소장은 지휘관에 준한다. 이하 같다)과 참모는 정착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을호 비상	가. 비상근무 을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 나.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병호 비상	가. 비상근무 병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가용경력 30%까지 동원할 수 있다. 나.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경계 강화	가.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특정분야의 근무를 강화한다. 나. 전 경찰관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경찰작전부대는 상황발생시 즉각 출동이 가능하도록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한다. 다. 지휘관과 참모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현황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현황(‘24.6월 기준)》

구분	합계	가급	나급	다급	라급
기관 수	205곳	18곳	70곳	46곳	70곳
지급대상자 수	2,128명	87명	1,426명	139명	476명

○ 소방공무원

- 소방공무원 비상상황 대비 직무복귀 규정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소방청 훈령)

-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도 3시간 이내 직무에 복귀가능 지역으로 이동제한
-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필수요원을 지정하고, 1시간 이내에 응소

-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현황

《소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현황('24.6월 기준)》

구 분	합계	인천	경기	강원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관수	82	15	5	33	16	9	1	2
근무인원	1,284	216	51	763	115	114	6	19
근무연수(평균)	1.2	1.6	1	1.3	1	1.3	1	1

※ 특수지(도서·벽지·접적) 안전센터 및 지역대현황(충북·충남·전북·부산 해당없음)